

202.9 호

행정 명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에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재해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umber 202)을 발령했기 때문에,

뉴욕주에서 COVID-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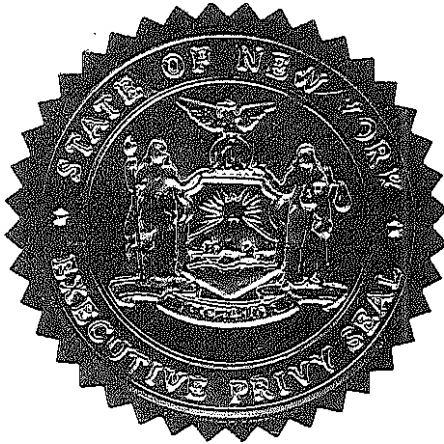
코로나19 비상 재난에 가장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뉴욕주가 신속하게 모든 물품, 서비스, 전문 인력, 자원봉사 인력을 소집하여 조직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4월 20일 월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은행법(Banking Law) 제39조 부속조항 2는 이에 정부 주서 관할권에 대항하는 모든 은행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곤란을 겪는 모든 사람 및 기업에 90일간의 유예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부정한 사업 관행으로 간주하도록 개정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행정부법(Executive Law) 2-B조의 제29-a항가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4월 20일 월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

-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청장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상황 하에서 모든 뉴욕주 고객을 위해 주정부에 등록되었거나 규제를 받는 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사람 또는 단체에게 모기지 지불 유예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청장은 고객들이 이러한 유예를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상황 하에서 이러한 비상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인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비상 규제를 발표할 것입니다.
- 또한 청장은 해당 비상 사태의 기간에 한하여 뉴욕 고객에 대한 재정적 영향, 등록되었거나 규제를 받는 단체의 안전성 및 건전성, 기타 적용 가능한 연방 규제를 고려한 등록되었거나 규제를 받는 단체에 대한 청장의 규제에 따라 자동 입출금기사용 수수료, 당좌 대월 수수료 및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개정 또는 제한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21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선포함 관인을 날인하여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Andrew Cuomo".

주지사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M. C.".

주지사 비서